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나8017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1나801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소482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전택윤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우

담당변호사 이태영

변론 종결2023. 5. 3.

판결 선고2023. 6. 7.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소482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35,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3. 4. 원고와 사이에, 자갈 등 사석 및 골재를 원고에게 납품하되,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납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같은 날 위 납품계약서에 C의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사석 및 골재 납품계약서

자갈	25mm	240,000	m ³	6,300	1,512,000,000	상차도
----	------	---------	----------------	-------	---------------	-----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선급금)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이 납품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선급금 일억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선급금에 대한 보증)

을은 일억 원의 선급금에 대해서 제8조, 제9조에 의거 성실하게 납품하여 정산한다.

만약 을이 성실히 이행을 안 하여 선급금의 상환을 못할 시, 갑은 을의 현장에서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한다.

제8조(납품기한)

을은 제1조의 납품량을 1/4로 나누어 분기별로 약속한 수량을 납품해야 한다.

제9조(선급금의 정산)

갑은 을이 납품한 물품대금 중 매출액의 20%씩 선급금에서 정산한다.

을이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선급금은 갑에게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할 시 반환기일로부터 년 20%의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선급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추가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 및 보증인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손해배상을 한다.

갑: 원고, 을: C

나. 원고는 2016. 3. 10.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C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한 선급금으로 총 603,939,707원의 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후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어음금을 결제하였다(위 어음금의 결제로써 C에게 지급된 603,939,707원을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다. C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기하여 총 574,704,360원 상당의 사석 및 골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라. C은 2016. 11.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2. C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잔액 29,235,347원 및 그 지연이자를 2018. 2. 10.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인으로서 선급금 잔액 29,235,347원 및 그 지연이자를 2018. 2. 10.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해지되어 C은 원고에게 선급금 잔액 29,235,347원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납품계약 제7조에 의하여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납품계약 제11조에 의하여 C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위 선급금 잔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급금인 이 사건 각 금원 603,939,707원에서 이 사건 물품의 물품대금 574,704,3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35,347원(= 603,939,707원 - 574,704,3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 1) 이 사건 납품계약 제7조는 "선급금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C이 선급금의 상환을 못할 시 원고가 현장에서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보증인의 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설령 피고에게 보증채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원 중 최초로 지급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 2) 민법 제428조의3 제1, 2항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 2항에 의하면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납품계약 제11조에는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보증은 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계약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 3) 제1심 공동피고 D가 이 사건 납품계약서에 피고의 인영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된다.
- 4) 이 사건 선급금 잔액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그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판단

가. 이 사건 납품계약서(갑 제1호증)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 제7조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 제7조는 비록 "선급금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C이 선급금의 상환을 못할 시 원고가 현장에서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선급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위 규정은 C이 선급금의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현장의 토지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현장에서 사석 및 골재를 채굴하여 판매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나아가 피고가 C의 선급금 잔금 반환 책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 제7조에 기한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위 조항을 피고가 C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초 지급된 선급금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증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이 사건 납품계약 제11조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 제11조는 C의 귀책사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증인인 피고가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이 이미 지급된 선급금 상당액의 사석 및 골재를 납품하지 않고 선급금도 반환하지 않아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위 민법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 제11조는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최고액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효력이 없다(C 및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최고액을 선급금 상당액인 1억 원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납품계약 제11조에 기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현진

판사박강균

판사김지향